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398 발의연월일: 2025. 5. 8.

발 의 자:이인선·강대식·박정하

강선영 · 성일종 · 박준태

김정재 · 고동진 · 조정훈

배준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부여함으로 써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고 있으며, 근로소득 증대는 고용 안정과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 근로소 득 증대 정책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여 근로자의 복지 향상과 경제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2030년 12월 31일---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 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 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 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 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 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 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 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

분 합계액의 100분의 20(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④ (생 략)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수있다.
- 1. ~ 3. (생 략)
- ⑥ ~ ⑧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5
<u>2030년</u>
12월 31일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